

보도 일시	2022. 8. 1.(월) 조간 2022. 7. 31.(일) 11:00	배포 일시	2022. 7. 29.(금)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 장 정규삼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장기봉 (044-200-5773)

항만 작업 전 집에서 미리 안전교육 받으세요

- 항만안전교육 이러닝시스템, '항만안전교육 포털' 8월 1일(월) 개장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8월 4일(목)부터 항만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 회사 등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교육 포털'(www.kptiedu.kr)을 8월 1일(월) 개장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 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오늘 8월 4일(목)부터 시행한다. 또한,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교육들은 화물차주와 관세청, 검역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4일(목)부터 8월 20일(토)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도 '항만안전교육 포털'에서 실시한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종사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라며, “「항만안전 특별법」 시행으로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는 항만근로자 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
1. 신규안전교육(최초로 7일 이상 연속하여 역무를 제공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가. 일반 항만운송 종사자 교육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하역장비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4) 작업의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작업의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8) 하역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8)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7시간 이상(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항만전용 하역장비 전담자 교육 1) 항만전용 하역장비(스트래들캐리어, 원격조종 자동화 야드 크레인 및 컨테이너 크레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특성과 작업실무에 관한 사항 2) 컨테이너 터미널 및 자동화 터미널 등 항만의 하역시스템에 관한 사항 3) 항만전용 하역장비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 항만전용 하역장비의 운전 및 장치의 조작 실습 5) 4)의 실습 사항에 관한 종합수행평가	가. 이론교육 7시간 이상 나. 실습교육 7시간 이상(스트래들캐리어에 대한 실습교육은 14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정기안전 교육 (7 일 이상 연속 하여 역무를 제 공 하고 있는 항만 운송 종사자)	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라. 항만하역장비, 항만하역관리 기계·장치 등의 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마. 작업 안전점검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에 관한 사항 바. 항만하역화물의 취급 및 항만운송 관련 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4시간 이상(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기초안전 교육	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항만 및 항만시설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1시간 이내(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비고

1. 제1호나목1)의 항만전용 하역장비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서 운반하는 장비

나. 원격조종 자동화 야드 크레인(Yard Crane): 컨테이너를 쌓거나 하역 또는 외부 운송을 위하여 야드(컨테이너 적재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는 하역장비 중 통제실 등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크레인

다. 원격조종 자동화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항만 부두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거나 야드에서 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주는 장비 중 사무실이나 통제실 등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4.)으로 항만운송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됩니다.

신규안전교육(7시간), 정기안전교육(4시간), 기초안전교육(10분)



검색창에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검색해 보세요!
(www.kptiedu.kr)

